

## 『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### 2. 제안이유

장애인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활 필수요금인 상수도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생계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

### 3. 주요내용

요금의 감면 및 지원 범위 신설(안 제41조제1항제10호)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,
- 구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'22. 8월 기준으로 16,762명이며, 이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sup>1)</sup>은 6,408명으로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월 수도물 사용량 중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(5,100원)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됨.
-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성은 있으나, 장애인 지원 관련 담당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--

1) 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15270호, '17.12.19. 공포, '19.7.1. 시행)됨에 따라, '장애 등급' 용어를 '장애 정도'로 변경하고, 장애 정도에 따라 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 및 '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'으로 구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표기함.